(붙임 1)

외화대출 취급지침

<2008.1.24일 제정>
<2008.11.7일 제1차 개정>
<2010.4.28일 제2차 개정>
<2010.7.1일 제3차 개정>
<2016.4.18일 제4차 개정>
<2017.5.22일 제5차 개정>
<2018.7.2일 제6차 개정>
<2020.9.14일 제7차 개정>
<2021.10.13일 제8차 개정>

1. 외화대출 용도제한 기본방향

□ 2010.7.1일 이후 외국환은행(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, 이하 외국환은행)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은 해외 실수요 용도의 자금에 한하여 허용

o 다만, 중소제조업체*에 대하여는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국내 사용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(전년도 기준 제조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액(매출액)이 가장 큰 사업활동이 제조업인 업체)

2.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범위

(적용 대상 외화계정과목)

□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금 계정(외화대출, 외화표시 원화대출, 전대차관자금대출*, 기타 대출 중 거주자에 대한 대출분)과 대내 외화사모사채에 대해 적용

* 단, 「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을 외국환은행이 전대하는 경우 제외

(적용 대상 기관)

□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에 대해 적용하며 "은행간 외화대출*"은 제외

*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-2조의 외국환은행(시행령 제14조 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)간 외화대출

o 증권사, 종금사 등 제2금융권 기관에 대한 외화대출은 "은행간 외화대출"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제한 적용 대상임

- 다만,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용도제한의 취지에 부합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 가능

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범위

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과목	적용여부	비 고
Ⅰ. 외화자산		
7. 외화대출금		
가. 외화대출	○	과거 외화여수신규정상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
나. 외화표시원화대출	○	
다. 전대차관자금대출	×	외화부채 계정과목 전대차입금 중 '정부차입금' 및 '공공차관자금'의 전대
	○	상기 계정과목 중 '국내금융기관차입금' 및 '기타전대차입금'의 전대
라. 기타	×	비거주자에 대한 대출
	○	거주자에 대한 대출
8. 은행간외화대출	×	
9. 외화사모사채	○	국내 발행 외화사모사채 취득 분
10. 내국수입유산스	×	

3.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

□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은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닌 해외 사용(물품의 수입 또는 용역비 지급 관련 대외외화결제, 해외직접투자, 비거주자 발행 유가증권 매입, 대외외화차입금 원리금 상환, 해외 파생상품 증거금 납입 등)을 원칙으로 함

o 다만, 상기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해외 실수요 외화대출로 인정

① 국내 수입독점업체 등을 통한 물품 구입

조달청이나 특정 독점업체의 수입을 통해서만 조달 가능한 일부 원자재 및 특정 물품의 구입을 위해 거주자간 외화로 결제되는 경우 해외 실수요로 인정

- 외국환은행은 수입독점업체에 대한 독점관련 계약서와 해외 수출업자 및 수입업체에 대한 독점관련 계약서, 해외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독점권에 대한 확인서 등을 징구*하여 관계 증빙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

  * 원본 징구를 원칙으로 하되 지침 내 "자금용도의 증빙확인"에 의거 원본대조필 사본 및 이중대출방지 확약서도 인정 가능

② 국내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앞 운전자금 송금

국내 본사가 해외 현지법인(또는 해외지점) 등의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「외국환거래규정」상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분류되면 해외 실수요로 인정

4.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사용 시설자금 외화대출

□ 시설자금 대출금은 한국은행이 제정한 「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」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의 장이 시설자금으로 인정한 자금으로서 운전자금과 구분되어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의 확인이 가능한 자금

□ 각 외국환은행별 중소제조업체 국내 시설자금 외화 대출한도는 2010.6.30일자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설정

□ 기 취급한 원화시설자금 대출을 거래기간중에 외화 시설자금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허

□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취급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

o 중소제조업체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한도내 사용 점검 등을 위한 '중소제조업체 국내 시설자금 대출한도액 운용 보고서'(월보)를 기한(익월 7영업일내)을 준수하여 제출

5. 외화대출 사후관리

(자금용도의 증빙 확인)

□ 대출실행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외화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되 기업의 용도외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감안 그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함

o 자금사용의 내역증빙 제출시기 등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각행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

□ 차주가 이미 자기자금 등으로 미리 집행한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실제 시설자금 용도임이 확인되고 자금집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취급을 허용

□ 거래증빙서류는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동 증빙상에 외화대출 실행사실 기재후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차주에게 반납

o 거래행태 등에 따라 원본 징구가 어려운 경우는 차주로부터 '이중대출 방지 확약서' 및 '원본대조필 사본' 등을 징구하여 사후관리

□ 대출만기 연장(대환 또는 재대출이 아님) 시에는 최초 취급 시의 용도 증빙으로 가능

o 다만, 리보(Libor)의 고시 종료로 인해 당행 대환(당행 재대출 포함)하는 경우에는 자금용도 증빙자료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

(외화대출 취급은행과 해외 송금은행의 일치)

□ 대출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화대출 취급은행이 직접 해외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o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지정거래외국환거래제도 등으로 특정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이 불가피한 경우 외화대출 취급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의 해외송금 허용

o 대출자금의 용도외 미사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하거나 해외 송금이 대출실행일 이후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외화대출 취급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을 허용

6. 기타 외화대출의 허용 여부 등

(타행 대환 및 수입거래 결제자금 대출)

□ 해외 실수요 및 중소제조업체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에 대한 타행 대환대출은 관계증빙 확인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허용

□ 타행에서 취급된 수입 거래 결제(유산스 및 L/C 만기 결제용 등)를 위한 대출도 실수요 증빙을 갖출 경우 허용

(보험계약대출*)

* 보험가입자가 보험 약관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외화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외화대출

□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도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해외 실수요 또는 중소제조업체 국내 시설자금 용도인 경우 외화대출 취급이 가능

(신디케이션 외화대출)

□ 신디케이션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시 전체금액의 증감에 관계없이 개별 은행의 최초 대출금액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'만기연장'으로 인정하고, 최초 대출취급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'신규대출'로 취급하여야 함

(외화대출 채무인수)

□ 차주가 변경되는 면책적 채무인수*의 경우에는 인수인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2-9조의 용도제한 요건을 구비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

* 차주 변경이 없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요건 제한 없음

o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업간 합병·영업양수도, 상속 등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

(대외결제 통화와 외화대출 취급통화 간 불일치 허용)

□ 외화대출 취급통화는 해외 실수요 증빙상 대외결제 통화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, 기존 외화대출의 기한연장이나 대환시에도 통화간 불일치 허용

7.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

(2010.6.30일 이전 취급된 외화대출*)

* 2010.6.22일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」 부칙 개정에 따른 조치 반영

□ 2010.6.30일 이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취급(계약분 포함)한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 연장은 허용

(2007.8.10일 이전 취급된 외화대출*)

* 2008.12.1일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」부칙 개정에 따른 조치 반영

□ 용도제한 조치 이전(2007.8.10일 이전) 취급된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

o 단, 각행의 내규에 따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기한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대환 또는 재대출 형태로의 취급은 불가능

o 한편, 용도제한 대상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연장시 거래은행은 기존 대출계약상의 취급통화와 다른 통화로 기한 연장 가능

□ 아울러, 특정 시점까지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외화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한도내 대출이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, 상환기한 연장은 한도내에서 건별로 이미 실행된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가능

o 한도내대출 약정상의 미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신규취급은 불가능

(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*)

* 2008.10.27일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」부칙 개정에 따른 특례 사항 반영

□ 2008.10.26일 이전에 체결된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관련 외화대출은 2017.5.22일 개정 「외화대출 취급지침」에 따라 처리

8.「외화대출 취급지침」등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의 처리

□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」, 동「절차」및 「외화대출 취급지침」등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용도제한 조치의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각행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하나, 명확치 않은 경우 한국은행(국제국 외환건전성조사팀)과 협의해야 함

<참고>

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」 관련 조항

제2-7조 (정의) 이 절에서 "외화대출"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을 말하며,「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」<별표 4-1>의「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」에 따른 "외화대출금"외에 국제국장이 정하는 대내외화사모사채를 포함한다.

제2-8조 (적용범위)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외국환은행이 「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전대
2.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화대출업무

제2-9조 (외화대출의 용도제한)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
2.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은 2010년 6월 30일자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해당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을 한도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중소 제조업체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.